

의안번호	제 77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9
----------	-----

발의연월일 : 2021년 6월 30일

발 의 자 : 김국기,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이산화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실내공기질 저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라.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안 제4조)

마.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안 제5조~제6조)

바. 실태조사(안 제7조)

사. 점검 등(안 제8조)

아. 교육 및 지원(안 제9조~제10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라. 입법예고: 2021. 6. 22. ~ 2021. 6. 27.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항목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계획(이하 “관리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 실내공기질 점검 및 결과 처리
3.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초과 시 대응 방안
4. 학교 실내공기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
5.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6.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관리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업무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3.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환기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학교 실내공기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보건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
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垓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
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
·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
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
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
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 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8.]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8. 3. 27., 2019. 10. 24.>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3. 4., 2008. 4. 28., 2013. 3. 23.>
-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 11. 14., 2008. 4. 28., 2019. 10. 24.>
- ⑤ 삭제 <2019. 7. 3.>

□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31., 2013. 3. 22., 2020. 5. 26.>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및 먼지,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

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 2020. 5. 26.>

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3. 6. 12., 2020. 5. 26.>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교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